

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2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 . . .
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충주 봉방동 푸르지오아파트 신축사업지역 내 2개의 법정동 (봉방동, 칠금동)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행정구역 법정동간(봉방동, 칠금동) 경계변경
→ 충주시 칠금동 17필지(1,025㎡)를 봉방동에 편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(1) 입법예고 (2014.2.13.~3.5)결과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완료

(3) 부패영향평가 : 심사완료

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심사완료

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⑪ 충주시 봉방동 관할구역에 칠금동 일부지역을 별표 18과 같이 편입한다.

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8]

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

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동	지 번	지 목	면적 (㎡)	동	지 번	지 목	면적 (㎡)	
계	17필지		1,025	계	17필지		1,025	
칠금동	217-14	제방	90	봉방동	1029	제방	90	
"	217-16	하천	11	"	1030	하천	11	
"	217-21	제방	1	"	1031	제방	1	
"	217-22	제방	6	"	1032	제방	6	
"	253-2	제방	16	"	1033	제방	16	
"	253-4	제방	117	"	1034	제방	117	
"	253-5	하천	436	"	1035	하천	436	
"	253-6	답	31	"	1036	답	31	
"	253-7	전	1	"	1037	전	1	
"	253-8	하천	1	"	1038	하천	1	
"	253-9	전	1	"	1039	전	1	
"	253-10	하천	17	"	1040	하천	17	
"	253-11	하천	1	"	1041	하천	1	
"	253-12	전	43	"	1042	전	43	
"	253-13	하천	84	"	1043	하천	84	
"	253-14	전	154	"	1044	전	154	
"	509-114	하천	15	"	1045	하천	15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관할구역 조정) ① ~ ㉔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조(관할구역 조정) ① ~ ㉔ (현행과 같음) ㉔ <u>충주시 봉방동 관할구역에 칠금동 일부지역을 별표 18과 같이 편입한다.</u>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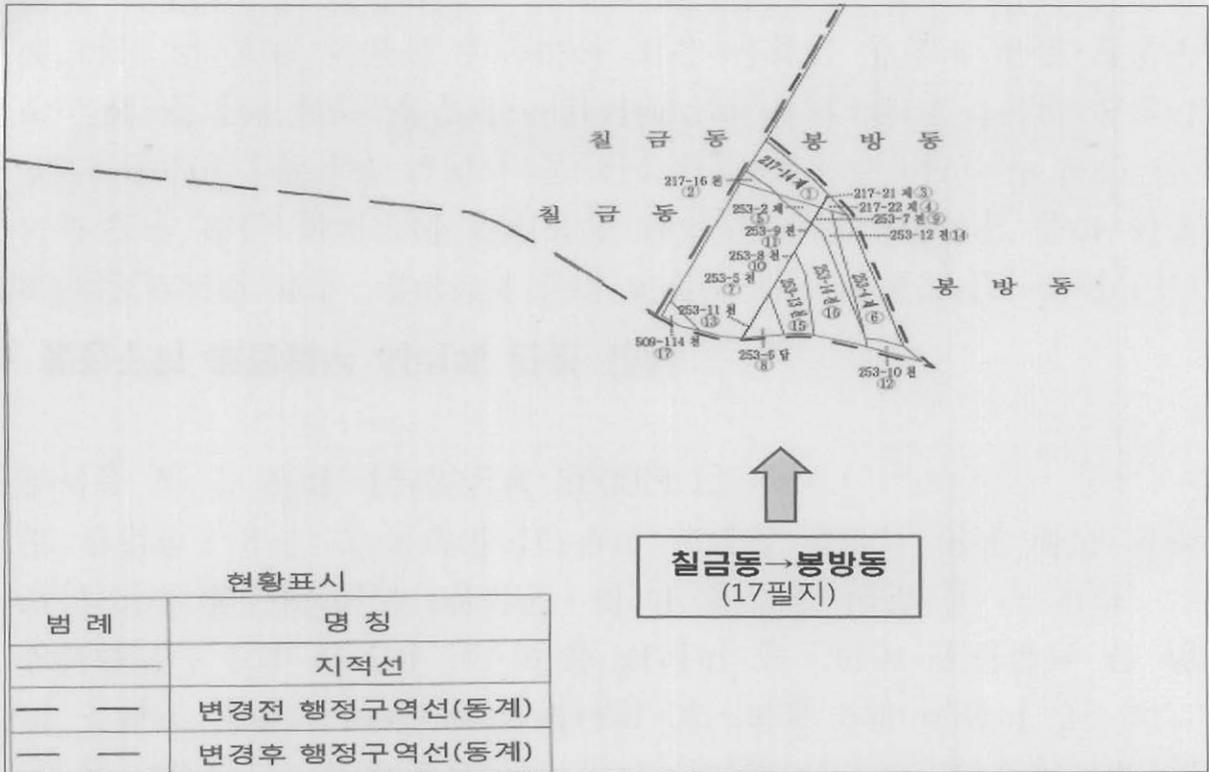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 [본조신설 2009.4.1]

□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

제9조의2(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)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·면·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봉방동 푸르지오아파트 경계변경 (칠금동→봉방동)

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(제3조 관련)

1. 비용수반 요인

- 금번 조례개정안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사업 지역 내 2개의 불합리한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수반 사항은 없음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(제3조 제1항 제1호)

3. 미첨부 사유

-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 예상 (비용수반사항 없음)

4. 작성자

- 안전행정국 총무과장 채홍국